

발표논문

동북아 e-Trade의 활성화를 위한 e-ADR에 의한 분쟁해결에 관한 연구*

최 범석** 박 종석*** 정 재우****

〈 목 차 〉

- I. 서론
- II. e-Trade 국제사업의 현황
- III. e-Trade국제사업의 평가와 분쟁해결논의의
필요성
- IV. e-Trade 확산을 위한 동북아 e-ADR에
의한 분쟁해결방안
- V. 결론

* 이 논문은 2002년도 한국중재학회의 중재학술발표 논문임

** 중앙대 경영학부 조교수

***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시간강사, 경영학박사

**** 중앙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 박사과정

I. 서론

한국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전자무역네트워크 구축사업 즉, 범아시아 전자상거래협력(Pan Asian e-Commerce Alliance: PAA)과 ASEM 전자무역네트워크구축사업, 한·일 e-Trade Hub사업 등의 국외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이러한 각종 e-Trade사업의 성과가 가시화되는 경우 동북아지역내에서 전자상거래 상권이 형성될 전망에 있다. 이러한 각종 e-Trade사업은 동북아지역내에서 법률적인 정비가 수반되지 않은 채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e-Trade와 관련한 다양한 분쟁이 야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e-Trade와 관련한 거래분쟁은 인터넷상의 거래분쟁과는 약간 다른 유형들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고 이와 관련한 분쟁해결수단도 기존의 분쟁해결수단과는 차별화된 방법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온라인 대체적 분쟁해결(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이나 온라인 분쟁해결(Online Dispute Resolution: ODR)에 대한 논의가 있으나 ODR의 경우에는 소송까지도 포함될 수 있는 개념으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ADR과 분쟁해결(Dispute Resolution)을 동일시 할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동북아지역내에서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 협력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한국이 중심이 되어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e-trade사업의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e-trade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동북아 e-ADR의 도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러한 주제에 대한 연구가 극히 미진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가 진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e-trade사업을 중심으로 그 현황을 분석하고 동북아지역에서 e-trade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동북아e-ADR의 도입방향을 제시하여 동북아에서 e-trade와 관련한 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연구목적이다.

II. e-Trade 국제사업의 현황

1. 범아시아전자상거래협력(Pan Asian e-Commerce Alliance) 사업의 현황

1) PAA사업의 시스템과 인프라

PAA사업은 <그림 1>에서와 같이 한국(KTNET), 중국(CIECC), 대만(Trade-Van), 홍콩(Tradelink), 싱가포르(Crimsonlogic), 일본(TEDI), 말레이시아(DagangNet)의 무역자동화사업자들이 글로벌 전자무역서비스의 사용, 경험과 노하우, 공동마케팅 등을 협력하여 서류없는 무역의 실현을 통해 역내 전자무역네트워크 구축을 목적으로 출범한 사업이다.¹⁾ PAA에서는 동아시아 각국의 무역자동화사업자들이 정부의 지원으로 XML언어기반의 전자자료교환(EDI) 즉, ebXML을 기본프레임워크로 채택하였고²⁾ 가능한 솔루션개발과 업무프로세스를 상호 호환성있게 제공하는 사이버무역 허브사이트를 구축하는 것을 최우선 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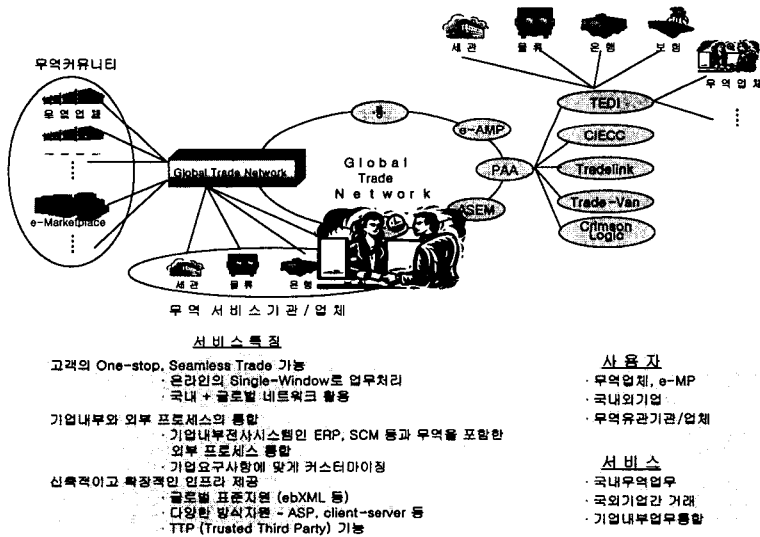
1) 산업자원부 무역정책심의관실, 「한·일 서류없는 무역(Paperless Trade) 실무협력위원회」, 2002.11.15, p.92.

2) KTNET, “글로벌 전자무역사업추진현황”, 2002.11, p.6.

표로 하고 있다.

각 국을 대표하는 사이버무역 허브사이트에서 역내 모든 기업이 한 곳에서 언제든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포털사이트를 구현하여 제공하며, 궁극적으로는 전자무역 네트워크 서비스와 포털 서비스 및 무역 e마켓플레이스 기능을 통합하는 ‘범아시아 메가포털’을 구축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림 1> e-Trade 인프라 서비스 모형



자료: KTNET, “Pan Asian e-Commerce Alliance-전자무역 인프라시스템 구축사업”, 2002, p.1.

3) 주요실적

PAA는 2000년 7월 이후 운영위원회(Steering Committee)회의가 9회에 걸쳐 이루어져 왔는데 그 동안의 주요실적은 다음과 같다.

(1) Pan-Asian E-Commerce Alliance Charter 채택

PAA의 회원종류를 창립회원(Founding member)과 평회원(Ordinary member)으로 구분하고 KTNET, SNS, Tradelink, Trade-Van 및 CIECC를 창립회원으로 하고 이후 가입사로부터는 평회원 자격을 부여하기로 하였다.

(2) 운영위원회와 사무국, 명의회사 설립

PAA 사업의 결정권을 가지는 운영위원회(Steering Committee: SC)와 각종 행정업무를 담당할 사무국(현재 Tradelink)을 지정하였다. 그리고 PAA 운영비용지출 및 회비 각출을 위한 명의회사로서 PAA Electronic Trade Service Ltd를 설립하였다.

(3) 협력추진을 위한 5개 WG 운용

그동안에 PAA사업에서는 <표 1>과 같이 협력추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5개의 WG가 결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표 1> 협력추진을 위한 5개 WG 운용

구 분	내 용
Secure Cross Border Transaction Service WG	주간사는 Tradelink이고 송장, 포장명세서, 주문서, 사전선적통지(Advance Shipping Notice) 등 4종의 전자문서를 시범개발, 유통시키기로 결정
Mutual Recognition of PKI WG	주간사는 Tradelink이고 PAA전자문서 교환을 위한 인증정책 수립과 PAA와 회원사간 상호인증 계약을 담당
Pan Asia Portal WG	주간사는 CrimsonLogic이고 Traders Directory구축과 향후 PAA서비스의 Web Application 개발을 위한 포털
Cargo Tracking Service WG	주간사는 KTNET이고 파이로트 시스템의 1차서비스(항공화물) 개발을 완료하고 현재 2차 서비스(해상화물) 개발중
e-marketplace WG	주간사는 CIECC이고 e-marketplace구축을 담당

자료: 산업자원부 무역정책심의관실, 「한·일 서류없는 무역(Paperless Trade) 실무협력위원회」, 2002.11.15, pp.96-97.

(4) 파이로트 프로젝트를 위한 PAA Business Model

KTNET의 경우 일본 TEDI와 현대자동차-미쯔비시 상사간 Cold Rolled Steel Coil 수출입 파이로트 시나리오를 가지고 1차 테스트 완료, 적용문서와 사용자를 확대한 2차 테스트 준비중에 있다. 화물추적의 경우 한국과 대만 TradeVan과의 테스트를 완료하고 실 서비스(항공화물)에 들어갔으며 2003년도 1/4분기에는 해상화물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PAA멤버는 참여 가능기업을 동 파이로트 프로젝트에 동참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5) 인증서비스 상호인증관련 CPA설립, 운영합의

인증서비스의 상호교차인증을 위하여 CPA(Certificate Policy

Authority)를 설립, 운영중에 있고 현재까지 KTNET의 TradeSign, CrimsonLogic의 Netrust, TradeVan의 TaiCA, Tradelink의 DigiSign 등 4개의 CA가 인정되었고 차기회의에서 CIECC(중국)의 CA가 인정될 예정이다.

(6) 전자선화증권(e-B/L)시스템

화주와 선사간의 운송계약, 화물에 대한 소유권, 제3자에게 양도가 가능한 유가증권의 특성을 갖는 선화증권(Bill of Lading)을 고려하는 별도의 시스템이 검토되고 있고 전자선화증권을 포함한 전자문서의 교환에 의한 거래가 종래의 Off-line 거래와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하는 법·협약적 기반으로 전자무역 표준협약(Club Agreement)이 마련되었다.³⁾

(7) 전자문서등록저장소(e-DRC)

네고(Negotiation)의 자동화를 구현하기 위해 선적서류(Invoice, Packing List, Certificate of Insurance, Bill of Lading 등)와 신용장(또는 D/P, D/A 등)과의 대조를 통한 거래조건이행 여부 확인과 수입통관 첨부서류를 종이로 보관, 제출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자문서 등록저장소(Electronic Data Reposition Center: e-DRC)를 구축하여, 전자 네고 및 수입통관 첨부서류 보관의 문제를 해결하는 토대를 확보할 예정이다.⁴⁾

3) KTNET, "Pan Asian e-Commerce Alliance-전자무역 인프라시스템 구축사업", 2002, p.4.

4) KTNET, 견제서, p.1.

2. 한·일 e-Trade Hub사업의 추진현황

1) 한·일 e-Trade Hub사업의 개요와 추진배경

전 무역거래과정에 적용할 수 있는 전자무역기반시스템을 구축하여, 한·일간 전자무역서비스를 구현하고 한·일간 무역거래절차를 간소화하고, 양국간 거래비용 즉, 약500억불의 교역규모에 따르는 6억불의 부대비용을 절감하고자 개시되었다.⁵⁾

2000년 9월에 한·일 양국 정상이 채택한 「한·일 IT 협력 이니셔티브」의 기본정신에 입각하여 한·일 양국간 전자상거래 협력의 확대를 위하여 추진키로 한 중소기업형 e-MP 구축하고 기업의 비즈니스 관점과 국가 대 국가간의 국제 협력관계를 고려한 e-MP 구축은 양국 산업간 무역 및 정보교류와 협력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었다.⁶⁾

아시아 e-Marketplace에서 중추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우리나라의 정책기조 및 'e-ASIA' 전자상거래 공동체구축을 도모하고자 하는 일본의 e-Business 정책과도 부합하였다.

2) 사업의 필요성

우리나라가 e-hub 사이트인 한·일 e-Trade Hub를 구축 할 수 있는 주된 원동력은 현재 추진중인 업종별 B2B 시범사업이 바탕이 되

5) 이창한, “한·일간 전자상거래협력 현황”, 「2002년도 추계정책포럼 및 학술대회-e-비즈니스의 확산과 글로벌화」, 국제e-비즈니스학회, 한국통상정보학회, 2002.11.15, p.6.

6) 산업자원부, “한-일 『서류없는 무역(paperless trade)』 시대 열린다”, 2002. 4. 9, p.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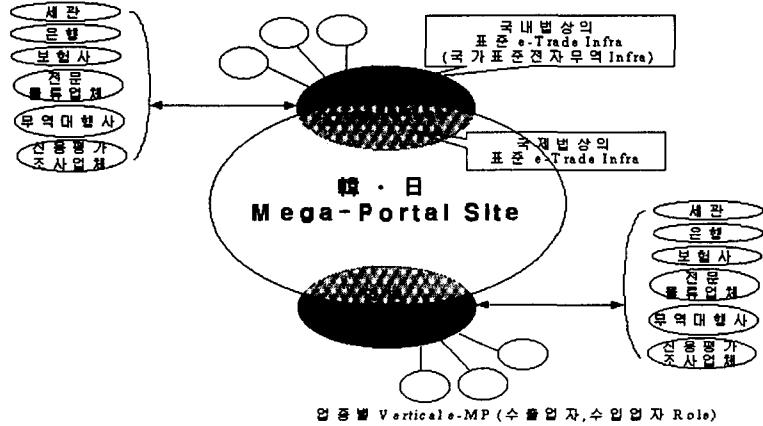
기 때문이고 각 업종별 B2B 시범사업은 업종별로 특화된 vertical e-Marketplace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한·일 e-Trade Hub의 추진을 통하여 현재 추진중인 20 여개의 업종별 Vertical e-Marketplace 외에 산업전반에 공통화된 수평적인 e-Marketplace를 구축하게 되며 Korea e-Hub site로의 인프라 확보가 가능하다. 현재 추진중인 시범사업의 e-Marketplace와 연결이 가능하게 되어 Vertical과 Horizontal e-Marketplace의 모델이 확보가 되어 국가간 거래에 사용할 수 있는 e-Marketplace 체제가 완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하다. 궁극적으로 한·일 전자무역네트워크와 양국의 Vertical e-MP를 결합한 한·일 e-Marketplace의 공동구축을 위하여 한·일 e-Trade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⁷⁾

7) 산업자원부 “21세기 새로운 수출 동력, 전자무역(e-Trade) 종합 육성시책”, 2001. 05, p.15.

3) 사업의 기본개념

<그림 2> 한일 e-Trade Hub 구축사업 개념도



자료 : 산업자원부 “21세기 새로운 수출 동력, 전자무역(e-Trade) 종합 육성시책”, 2001.05, p.15.

사업목표로서는 첫째, 중소기업의 해외 거래망 확대이다. 즉, 한·일간 거래확대를 통하여 판매자 및 구매자로서 참여하는 기업들의 해외 판매망 확산과 구매의 효율성을 증대한다는 것이다.⁸⁾

둘째, 국가간 무역업무를 지원하는 e-Trade Infrastructure를 구축하는 것이다. 중소기업이 e-Trade Hub를 통해 타 국가의 기업 및 품목 선정에서부터 거래조건 협의, 시장조사, 바이어 발굴 및 정보교환, 수출입 계약체결 등 국가간 거래에 필요한 과정을 수행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그림 2>에서와 같이 한·일간 온라인 무역

8) 한국전자거래협회, “e-Trade Hub구축사업(e-AMP)”, 2002.5.18, slide 3-4.

거래가 가능하도록 검색, 통관, 물류, 지불 등의 기능을 제공하고 각 수직적 e-MP와 연동되어 Transaction을 처리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셋째, 국가간 전자상거래에 필요한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산업·업종별 B2B Marketplace의 수직적 기능에 무역·통관·물류·결제 등의 수평적 비즈니스 기능을 결합하여, 산업 전반에 공통된 수평적인 e-MP를 구축함으로써 국가 e-Business 인프라를 확보하는 것이다.

4) 추진경과 및 시스템구축

(1) 추진경과

한·일 정상회담(2000년 9월 동경)에서, 양국 전자상거래 협력방안으로 서류 없는 무역을 추진키로 합의하여 2000년 11월, TEDI 프로젝트 참여 기업 중심의 TEDI Club 결성 및 한·일간 전자무역 네트워크 프로젝트 진행을 제의하였고(통산성, TEDI Club) 2001년 6월, KTNET, TEDI간 파일럿 프로젝트가 협의되었다. 그리고 기술적 시스템 연동테스트를 [EDI(KTNET)-to-XML(TEDI), ebXML(KTNET)-to-ebXML(TEDI)]의 2단계로 나누어 추진하기로 하였고 2001년 10월, 제2차 한일전자상거래정책협의회(제주)에서 국내 자동차업계의 일본산 강판 수입을 한·일간 전자무역 파일럿 프로젝트의 사례로 적용하여 추진키로 하였다. 2001년 11월, 사업추진 제4차 회의(서울)에서 전자문서를 송장(I/V), 포장명세서(P/L), 선화증권(B/L)통지로 확정하였고 2002년 7월, 2단계 프로젝트 진행을 동경에서 협의하였다. 여기에서 1단계 프로젝트 수행결과를 평가하고, 2단계 프로젝트 관련 이슈를 검토키로 하였다. 2002년 9월 6일에 경주에서 한일전자상

거래정책협의회 제4차 회의가 개최되었는데 공동으로 구축하고 실증 실험에 성공한 e-마켓플레이스와 전자무역시스템의 연계를 강화하고 아시아에서 서류없는 무역의 공통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양국간 서류없는 무역을 실현하기로 합의하였다. 2002년 11월 일본 동경에서 양국정부(산업자원부, 경산성), KTNET, TEDI, 무역협회, 시범사업 참가업체 등 20여명이 1차 협의를 하였고 2003년 2월까지 4종류의 전자문서가 교환될 수 있도록 협의하기로 하였다.⁹⁾ 1단계 프로젝트의 내용을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표 2> 1 단계 프로젝트 내용

구 분	내 용
참가 사용 자기업	한국 : 현대자동차, 외환은행, 신성해운, 일렉트로피아, 한국후지쯔 등 일본 : 미쓰비시상사, 스미토모상사, 도쿄미쯔비시 은행, 오리엔트해운 등
수행결과	1차 전자무역 파일럿 프로젝트를 통하여, 일본의 미쓰비시상사 등과 한국의 현대자동차 등 최종사용자간 Invoice, Packing List, B/L Advice 등 3종 문서 교환

(2) 시스템의 구축내용

한·일 e-Trade Hub사업을 통하여 구축된 시스템은 <그림 3>과 같이 XML Hub 구축 및 데이터베이스 지원, 업체정보DB구축 등이다.

9) KTNET, 전게서, p.3.

<표 3> 시스템의 구축내용

XML Hub 구축 및 데이터베이 스 지원	허브가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XML엔진을 구축함
업체정보 DB구축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정보통신, 기계산업진흥회 등에 이미 구축되어진 업체DB 등을 활용하여 실제로 일본측과 거래할 수 있는 업체정보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 -일반적인 업체정보는 허브에 구축되는 Database에서 제공할 것이며 상세정보는 각각의 Vertical e-MP의 Database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구축할 계획임
부품 DB연동	현재 B2B시범사업을 통해 기계업종에 구축되어있는 부품 DB를 허브에 연동시키는 작업을 고려 중
번역 Gateway 구축	국내 번역 소프트웨어를 도입하여 허브에 Gateway형식으로 연동시킴으로써 일본으로 수신되는 모든 데이터를 번역하여 Vertical e-MP에 송신할 수 있도록 구축함
거래 프로세스 구축	견적회답, 견적평가, 발주주문(발주확인)의 프로세스에 필요한 각종 문서를 정의하고 문서 내에 필요한 데이터 항목들을 공동으로 정의하여 XML로 주고받을 수 있도록 구축함

6) 한·일e-Trade Hub 1차사업 성과와 2차사업의 추진방향

(1) 한·일e-Trade Hub 1차사업 성과

한·일 전자무역 사업의 추진으로 사이버 무역거래의 활성화 도모 및 상호 이익 증대를 통하여 한일 양국 기업간 거래에 따른 비용 절감과 생산성 향상 및 국제 경쟁력 확보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1차사업에서 한·일 간 e-AMP 체계 구축 및 실증실험이 완료되었다.(기업DB, 제품 DB 상호검색 및 상호견적 및 주문, 입찰까지 실증 실험 완료)

<표 4> 1차사업의 추진성과의 요약

한·일 전자무 역 기반 시스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INET과 TEDI(일본의 무역자동화시스템)간 연동을 통하여 한·일간 무역거래절차를 간소화하고 전자화함으로써 해외 전자무역 네트워크들과 연동하여 글로벌 전자무역 서비스 토대 확보 · 2002년 2~3월에 1차 파일로트 테스트를 한국 및 일본에서 실시하여 최종사용자간 전자문서(I/V, P/L, B/L Advice) 송수신 테스트 실시 및 에러 수정작업 완료
한·일 간 MP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ASIA Marketplace 구축을 위한 아시아 국가간 최초의 구축사업으로 아시아 지역으로의 사업영역 확장을 위한 전초기지 역할을 수행 · e-AMP를 통해서 전자상거래와 전자무역 기능을 제공하여 상대국의 기업을 검색할 수 있으며, 인터넷상에서 수발주업무, 입찰업무 등을 이용할 수 있음 · 업종은 기계, 전자, 전기부품업종을 우선 적용하였고, 향후 아시아 다른 국가와 좀 더 많은 업종에 확대시킬 계획임

한·일간 KINET-TEDI를 중심으로 <표 4>와 같이 전자무역 1차 시범사업 추진을 통한 전자무역의 기반이 조성되었는데 한·일간 Invoice, Packing List, B/L advice를 최종사용자까지 송수신하는 테스트가 완료되었다.¹⁰⁾

(1) 2차사업의 추진방향

2차사업내용의 방향이 수정되었는데 무서류거래로 중심전환이 이루어졌다. 2001년 현대자동차의 對日거래에 대한 Paperless Trade구현을

10) 산업자원부, “서류없는 무역실현(한일전자무역 기반시스템구축사업)”, 2002, p.8.

통해 feasibility가 검증된 전자무역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기존 현대차를 대상으로 한 P/L, I/V, B/L Advice를 5개 업종으로 확대하고 B/L, 지급지시서, 입출금통지서, 원산지증명서(C/O) 등을 추가할 예정이다. 주관기관을 전자거래협회에서 KTNET로 변경하고, 전자무역 확산전략(8.12)을 반영하여 2~3단계 사업 방향의 재정립을 추진하였다.¹¹⁾ 2차사업은 e-Trade Hub 종합기획안 작성, 한일 전자무역체계 구축, 솔루션개발 및 기술정보지원(전자무역 보급), 국제 e-Trade 실행협의체제 추진, 한일 e-AMP 운영 및 프로모션, e-Trade Repository 구축, 중소기업 국제 협업체계(SCM) 플랫폼 전략수립으로 구성되어 있다.

3. ASEM 전자무역네트워크 구축프로젝트의 현황

1) 배경과 목적

한국은 2001년 10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1차 ASEM 전자상거래회의에서 아시아와 유럽간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ASEM 전자무역 네트워크 구축 프로젝트의 추진을 제안하였다. ASEM 전자무역 네트워크 구축의 첫 단계로 추진코자 하는 한·EU간 전자무역 네트워크 구축 프로젝트는 기존의 Fax, e-Mail, 우편 등에 통신수단상의 낭비적 요소가 많기 때문에 정보 및 서류 교환을 전자적으로 전달하는 무서류시스템을 실현하고, 개별기업 및 단체가 공통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Hub개념의 메시지 중계센터를 구축하여 무역거래의 효율성을 증대하며,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국가적 인프라 차원의 시스템 구축으로 개

11) 산업자원부 무역정책심의관실, 전게서, pp.61-62.

별업체들의 업무적, 비용적 부담을 해소하고, 중복투자를 방지함으로써 효과적인 전자무역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¹²⁾

2) 추진전략

제1차 ASEM 전자상거래회의에서 한국이 제안한 ‘ASEM 전자무역 네트워크 구축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2002년 1월 산업자원부를 중심으로 관련기관, 업체 담당자들로 구성된 조사단이 유럽내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 파트너인 영국과 독일에 방문하여 이들 국가와의 전자무역 네트워크 구축 타당성을 조사하였다.

이 조사에서 대표적인 VAN업체를 활용하여 무서류화를 추진하는 방식을 유럽에 적용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결과가 도출되었다. 즉, 유럽국가에서는 정부가 이런 사업을 주도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으며, 각 업종별로 무역거래의 무서류화를 추진중이어서 정부 주도하에 단일 양식의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대자동차와 같은 대기업의 구매업무 무서류화를 대상으로 업체, 은행, 해운회사(물류) 등이 참여하는 무서류 네트워크 모델을 KINET를 중심으로 협의하여 만들고, 이를 고객요구 차원에서 상대국에 요구하여 가동시킨 후 정부부문을 연결시키는 전략이 채택되었다.

따라서, 우선 추진 대상으로 독일로부터의 부품을 구매하는 현대자동차의 부품구매업무를 무서류화하기로 하였으며, 시범운영 완료후에 ‘독일’로부터의 ‘자동차’ 관련 업무를 무서류로 처리하는 모델을 구축한 후 이를 유럽내 타국가, 타업종으로 확산하는 전략을 세웠다.

12) 조동우, “ASEM 전자무역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정책방향과 추진현황”, e-commerce, 2002년 9월호(통권42호), 2002.9 참조.

3) 추진조직과 서비스 내용

현재는 <표 5>와 같이 한국측 Task Force Team과 독일측 참가자로 구성되어 조직이 이루어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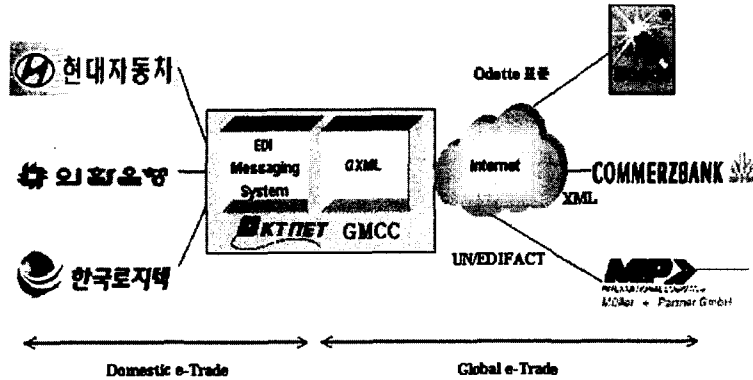
<표 5> 추진조직과 서비스 내용

조직	한국측 Task Force Tea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자원부 전자상거래 총괄과, 무역정책과 : 법/제도개선을 통한 정책적 지원 · KTNET : 전자문서 송수신을 위한 표준 및 변환 · 한국전자거래진흥원 : 전자문서 표준을 위한 조사 및 연구 · 현대자동차 : 파일럿시스템의 개발 및 적용을 위한 협조 · 외환은행 : 상대국은행과의 대금결제를 담당 · 한국로지텍 : 한국측의 포워드
	독일측 참가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기술부 : 전자무역을 위한 정책적 지원 · 보쉬사 : 현대자동차에 대한 부품 수출사 · 코메르츠 뱅크 : 외환은행의 거래상대방 은행 · Muller+Partner : 독일측의 포워드
서비스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과 독일간 자동차 부품의 수출입업무중 Invoice, Packing List, B/L Information문서의 무서류화를 우선 추진 · 독일에는 국가주도형의 VAN(Value Added Network)이 없기 때문에 한국의 KTNET이 양국의 전자문서를 사용자가 읽을 수 있도록 변환시킬 수 있는 GMCC(Global Message Connection Center)를 구축 	

4) GMCC와 시스템구성

ASEM사업의 핵심이 되는 GMCC(Global Message Connection Center)와 시스템은 <그림 3>, <표 6>, <그림 4>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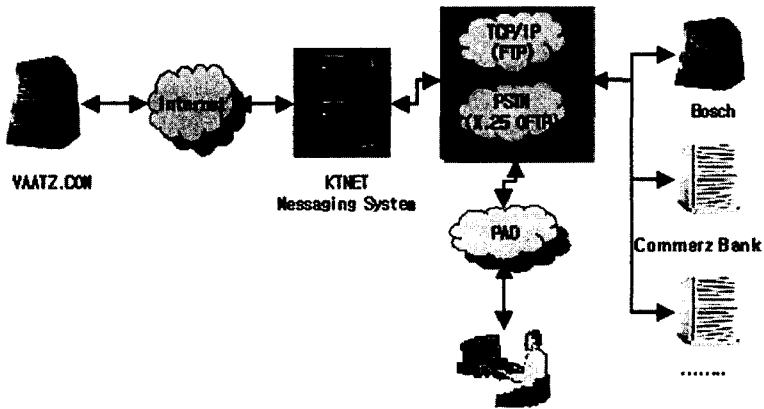
<그림 3> GMCC 아키텍처



<표 6> GMCC의 기능과 요건

주요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상거래 국제 표준인 ebXML 표준 기반으로 구축 · 모든 형태의 문서(EDIFACT, ANSI X12, XML 등)나 통신 프로토콜을 지원할 수 있는 유연성 보유 · 기존 국내 무역 자동화 인프라와 통합 서비스 · 무역 중간계에 걸친 업무서비스 제공 가능 · 공인인증기관인 KTNET 인증센터 연동으로 인증서와 전자서명을 이용하여 안전한 거래 보장 · 기존 EDI 사용자는 신규 서비스를 위한 추가 개발 없이 동일하게 업무 처리 가능 · PAA, 한일망 연동 등 주요 전자무역 사업과 통합 가능
문서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적으로 참여자는 자사의 기존 문서를 그대로 사용 가능하나 변환을 위해 매핑 사전 준비 작업이 필요 · 매핑을 위해서는 상호간 사용하는 문서 표준과 종류에 대한 사전 정의 및 의미 규정 필요
통신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적으로 참여자는 인터넷 기반 통신 프로토콜을 사용하나 필요시 표준화도 수행(HTTP, HTTPS, SMTP, FTP, ebXML)
보안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래 안전 보장을 위해 PKI 기반의 인증기관 사용 · 경우에 따라 인증기관간 상호 인증이 필요할 수 있음

<그림 4> 시스템구성도



5) 추진결과 및 향후 계획

먼저 Test Message의 송수신 테스트를 총 6단계로 구분하여 작년 말까지 실시할 예정이었고 시범서비스 개통을 2단계로 나누어 실시할 예정인데 1단계는 시범서비스 개통, 2단계 서비스 확대는 2003년 3월부터 예정되어 있다.

이를 토대로 2003년에는 Pilot 시스템 운영결과를 토대로 무서류 대상문서를 확대하고, GMCC를 구축하여 실질적인 무서류화를 실현하고 향후 이 네트워크를 2004년에는 EU 전 지역으로 확대하고(자동차 분야), 2005년에는 타 업종으로 확대할 장래계획을 가지고 있다.

Ⅲ. e-Trade국제사업의 평가와 분쟁해결논의의 필요성

1. e-Trade국제사업의 평가

한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e-Trade사업을 비교하면 다음 <표 7>과 같다. 각 사업의 문제점에서 볼 수 있듯이 각 사업들은 업무 프로세스의 표준화와 단순화를 도모하지 않고 기존의 프로세스를 전자화하는데 치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각 사업 모두가 전자선화증권이나 전자환어음의 운용계획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어 네트워크만 구성되어 있지 실질적인 e-Trade의 구현에는 아직까지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다. PAA사업의 경우에는 전자선화증권을 운용하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으나 한국내에서조차도 이러한 전자선화증권을 운용할 기반시설이 구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실증실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e-Trade사업의 경우 법역을 달리하는 국가간의 거래이므로 법률적인 접근도 병행되어야 하지만 PAA사업의 Club Agreement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법적인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러한 법률적인 문제와 관련한 다양한 분쟁을 야기시킬 수 있다. 그리고 각종 e-Trade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신뢰할만한 제3자(Trusted Third Party)의 역할이 아주 중요한데 이러한 제3자 모델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즉, 무역서류의 전자문서화 뿐만 아니라 물류, 통관, 신용정보(평가), 인증, 금융서비스, 분쟁조정(중재)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이 예상되는 이러한 제3자 모델의 종합 중립형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e-Trade사업과 관련된 핵심과제라고 할 수 있는 전자선화증권에 대

한 기존모델에 대한 평가와 이에 대한 명확한 대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자환어음에 대한 연구는 거의 진척이 되지 않고 있다.

<표 7> 해외망연동사업의 비교

구분	PAA사업	ASEM e-Trade사업	한일e-Trade Hub사업
사업의 목적	범아시아지역의 무역자동화사업자들이 글로벌전자무역서비스의 사용, 경험과 노하우, 공동마케팅 등의 차원에서 협력을 목적으로 출범	ASEM내에서 전자무역을 실현하고 Hub개념의 메시지 중계센터를 구축하여 무역	한일간 전자무역서비스를 구현하고 한일간 무역거래 절차를 간소화하고 양국간 거래비용을 절감할 목적
주요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AA 현장(Charter) 채택 · 운영위원회, 사무국, 명의회사 설립 · 협력추진을 위한 5개 WG운영 · 파이로트프로젝트를 위한 PAA 비즈 모델 수립 · 인증서비스, 상호인증을 위한 CPA설립과 운영합의 · e-B/L시스템운용을 위한 표준협약(Club Agreement)마련 · 전자문서등록저장소(e-DRC)구축 합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의 KINET가 양국의 전자문서를 사용자가 읽을 수 있도록 하는 GMCC(Global Message Connection Center)를 구축 · 표준관련합의(UN/EDIFACT) · 통신방법합의(X.25, TCP/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일간 e-Trade Hub체제 구축 및 실증실험완료 -한일 MP간 기업/제품 DB상호검색 및 상호견적 및 주문/입찰까지 실증실험완료 -한국의 현대자동차가 일본의 미쓰비시상사로부터 자동차강판을 수입하는 무역플로우 실증 실험완료(Invoice, P/L, B/L통지) · 5개 WG운영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문서 저장모델에서 중앙등록시스템이 바람직하나 분산서비스모델 선호 · 전자금융서비스와 관련하여 중앙집중모델이 바람직하나 다중 허브 시스템이 추천됨 · 현재의 전자무역결제시스템이 반영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럽에서의 뚜렷한 추진 주체(전담기구)가 없음 · 한국과 독일의 사업성과의 확산에 의구심 · 망연동에만 집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기적인 비전하의 사업추진과 강력한 실행 체계가 미흡 · 참가기업의 미흡 · 일본측(ECOM)의 소극적인 태도 · 일본에 유리한 기계, 전자, 전기부품에 사업추진 · 현재의 전자무역결제시스템이 반영되지 않음

2. e-trade사업상의 분쟁해결논의의 필요성

동북아시아지역내에서의 e-Trade사업과 관련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될 것으로 예측되며 특히 이러한 문제점과 관련한 당사자들간의 분쟁이 야기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우선 e-trade의 고유한 특성과 관련한 분쟁의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e-trade를 위해서는 기 개발된 전자선화증권의 운용모델로서 볼레로 선화증권 모델이나 대금결제모델로서 TradeCard나 볼레로 SURF모델의 이용이나 이와 유사한 모델을 구현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모델이용과 개발과 관련하여 Biz모델특허와 관련한 분쟁이 야기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e-trade를 각국의 법률정비단계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e-trade와 관련한 각국의 법적용과 상이한 법률체계에 따른 당사자의 분쟁이 야기될 가능성이 많다.

셋째, e-trade사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망접속과 관련한 사고 즉, 네트워크오류와 관련한 분쟁이 야기될 수 있을 것이다. 네트워크의 접속 불능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그 피해가 엄청날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해야 하는 분쟁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인증시스템이나 인증기관의 역할과 관련한 분쟁이 야기될 수 있다. 국가간의 거래에서는 인증기관의 상호연동이 불가피한데 이러한 인증기관의 상호연동상의 오작동으로 인한 사고시 대금결제와 관련하여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당사자들간의 분쟁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다섯째, e-Trade를 하기 위해서는 권리등록기관이나 전자문서등록 저장소가 필요한데 이러한 권리등록과 전자문서등록과 관련한 분쟁유

형을 또한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동북아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각종 e-Trade와 관련한 사례들을 기존의 인터넷상의 분쟁사례¹³⁾를 통하여 도출하면 다음과 같은 유형들을 찾을 수 있다.

첫째, 계약의 성립과 계약조항과 관련한 분쟁사례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될 수 있는데 특히 클릭랩(Clickwrap)계약과 쉬링크랩(Shrink)계약과 관련한 사례들이 많이 발생될 것이다.

둘째, 재판관할권과 관련한 사례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러한 재판권은 웹사이트활동에 근거한 재판관할권문제와 재판지와 관련된 사례로 나타날 수 있다.

셋째, 지적소유권과 관련한 사례들도 많이 발생할 것인데 특히 쇼핑몰이나 웹사이트구축에 따른 도메인네임과 관련한 사례들은 수없이 발생하고 있는데 동북아지역내에서 e-Trade가 활성화되면 도메인네임과 관련한 사례들이 많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e-trade상의 상표권침해와 관련한 사례, 웹사이트상의 다운로드와 업로드와 관련한 사례들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e-trade와 관련한 스팸메일과 관련한 사례도 또한 많이 발생할 것이다. 이는 각국내에서 스팸메일과 관련된 법률을 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그 심각성을 알 수 있으며 동북아지역에서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면 이러한 스팸메일과 관련한 분쟁이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

다섯째, 동북아지역내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e-trade상의 소비자보호와 관련한 분쟁이 많이 발생할 것이다. 각국의 e-Marketplace가 활성화

13) 최석범, “인터넷상거래상의 분쟁사례분석을 통한 효율적인 사이버법률구성 모델에 관한 연구”, 「국제상학」, 제17권 제1호, 2002.05, pp.437-449.

화되고 한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e-Trade사업의 성과가 가시화되면 동북아지역에서 e-Trade와 관련한 소비자보호와 관련한 분쟁이 야기될 가능성이 많다.

여섯째, 동북아지역의 e-trade가 활성화되면 명예훼손이나 프라이버시침해와 관련한 분쟁이 야기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명예훼손이나 프라이버시침해는 개인의 인격적 가치를 둘러싼 분쟁으로 많이 발생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IV. e-Trade 확산을 위한 동북아 e-ADR에 의한 분쟁해결방안

1. 동북아 e-ADR제도의 도입

1) e-ADR의 의의와 도입필요성

(1) e-ADR의 의의

인터넷상을 통한 ADR과 관련하여 온라인 대체적 분쟁해결(Online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은 재판외의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라고 할 수 있다.¹⁴⁾ 온라인ADR은 인터넷을 매개체로 소송을 제외한 중재, 조정, 음부즈만 등 다양한 전통적 ADR기법을 구사하는 자동화시스템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나¹⁵⁾ 인터넷을 매개체로 하여 이루어지

14) 홍성규,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ADR의 특성과 실현과제”, 「국제상학」, 제 16권 제2호, 2001.11, p.406.

15) 산업자원부·한국전자거래진흥원·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2001 전자거래분쟁조정사례집」, 2002.1, p.27.

는 대체적 분쟁해결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적합한 정의일 것이다. 그리고 e-ADR이란 온라인 ADR과 동일한 의미로 이해할 수 있으나 본고에서는 인터넷을 통하여 사이버상에서 모든 분쟁수단이 구현된 대체적 분쟁해결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즉, 기존의 온라인 ADR은 온라인 상으로 이루어지는 ADR의 각각의 유형들을 의미하는 경향이 있는데 <표 8>에서와 같이 e-ADR은 사이버상에서의 모든 유형의 ADR의 집합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내릴 수 있다.

<표 8> 온라인ADR과 e-ADR

구분	온라인ADR	e-ADR
동원수단	개별적인 ADR수단에 중점	종합적인 ADR수단에 중점
주체	각각의 ADR기관	한 기관이 ADR수단 전부를 제공
절차의 온라인화	일부 Offline절차도 포함	모든 절차의 Online화
타 수단편 제공	타 수단에 대한 편의나 접근을 제공하지 않음	타 해결수단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거나 타 해결수단에 대한 접근을 제공
주요 해결수단	운용기관에서 제공하는 수단 즉, 화해, 조정, 중재 중의 하나만을 제공	중재를 주요수단으로 하고 보완적으로 협의, 조정수단을 병행

(2) 도입필요성

OECD는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가이드라인에서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사법절차에 의한 소송제도를 이용하지 않고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방안으로써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의 도입과 활용에 대해 규정하고 각국에 권고하고 있는데¹⁶⁾ e-Trade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e-trade상의 각종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수단으로 e-ADR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즉, ADR의 유형인 화해, 알선, 조정, 중재를 사이버상에서 해결하는 e-ADR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사이버알선, 사이버조정, 사이버중재를 구현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각종 온라인 ADR사이트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효율적인 시스템을 동북아지역에서 가동할 필요가 있다. 즉, 전술한 동북아e-Trade상의 분쟁유형도출과 관련하여 도메인명과 상표와 관련한 지적재산권문제의 경우 도메인의 국제적 이용으로 범역을 초월하여 심각한 범저촉문제를 가져오고 각국 법원의 사법마찰까지도 진전될 가능성이 있다.¹⁷⁾ 따라서 국제적인 e-ADR의 도입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소비자보호관련 분쟁의 경우에 e-Marketplace의 운영자가 e-ADR을 통하여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2) 동북아 e-ADR의 도입방안

첫째, 동북아 e-Trade의 활성화차원에서 다양한 분쟁수단을 구비한 종합적 e-ADR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기존의 e-ADR의 도입사례를 보면 미국의 Virtual Magistrate(VM)의 경우 중재형에 가깝고 Online Ombuds Office(OOO)의 경우 조정형에 가까운데 OOO가 VM보다 많은 처리실적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분쟁관련자가 조정형인 OOO에 접근하기가 용이한 데에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동북

16) 전게서, pp.7-8.

17) 홍성규, 전게서, pp.406-407.

아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e-ADR은 협의나 알선, 조정, 중재의 다양한 분쟁해결수단을 구비하여 체계적인 e-ADR체제를 구축하여 원스톱 분쟁해결을 도모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동북아e-ADR에서 핵심은 사이버중재이어야 한다. 소송을 제외한 분쟁해결수단으로서 최후의 수단이 바로 중재이므로 이러한 중재절차를 사이버상에 구현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이버중재시스템을 중심으로 사이버협의, 사이버알선, 사이버조정 기능이 추가로 구현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동북아내에서 거래당사자들이 e-trade를 수행하는 경우 전자계약서상에 분쟁을 동북아e-ADR기구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는 사이버중재약관을 기재하여야 할 것이고 e-Trade 관련 기관들 예를 들면, 자동화사업자, 권리등록기구, 인증기관 등도 사용자와의 계약시 이러한 약관을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할 필요가 있다.

셋째, 동북아지역내에서의 상사중재관련 기구를 중심으로 동북아 e-ADR을 도입하기 위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대한상사중재원, 한국중재학회 등이 중심이 되어 동북아지역에서의 각종 e-Trade사업과 관련한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e-Trade와 관련한 분쟁해결수단 특히 e-ADR체제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권장할 필요가 있거나 동북아국가들의 상사중재관련 기관이나 학회를 중심으로 동북아 e-ADR에 대한 논의를 체계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이러한 동북아 e-ADR은 한중일 삼각체제하에서 구성된 합동 기구에 의하여 도입되고 유지될 필요성이 있으며 한국이 주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국제협력에서 이러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제의하고 추진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한국내에 동북아 e-ADR기구와 e-ADR법정을 유치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동북아 e-ADR을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동북아 e-ADR을 위한 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할 필요성이 있으며 사이버중재를 중심으로 규정하고 사이버협이나 사이버알선, 사이버조정에 관한 규칙을 보완적으로 수용하여야 할 것이다.

2. 한국 및 동북아중심의 다양한 사이버 분쟁해결제도 및 기구의 도입

1) 한국내에서 다양한 사이버분쟁해결제도의 도입

(1) 한국내에서의 다양한 사이버분쟁해결제의 현황

한국내에서는 조정 및 중재기구가 상당수 존재하고 있는데 e-비즈니스와 관련한 기구로서는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가 있다. 국내에서의 조정 및 중재기구를 살펴보면 <표 10>과 같다.

<표 9> 한국에서의 조정 및 중재기구

기구명	기능	관련법령
전자거래분쟁 조정위원회	전자거래관련 분쟁 조정	전자거래기본법 제28조
상사중재원	국제적인 상사분쟁조정	중재법
증권분쟁 조정위원회	유가증권의 매매 및 거래에 관련 분쟁조정	증권거래법 제202조
금융분쟁 조정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기관의 업무와 관련한 분쟁의 조정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련 법률 제51조
보험분쟁 조정위원회	보험모집 및 보험계약과 관 련된 분쟁조정	보험업법 제197조의 2
산업재산권분쟁 조정위원회	산업재산권과 관련한 분쟁 조정	발명진흥법 제29조
소비자분쟁 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분쟁에 대한 조정 등	소비자보호법 제3절
통관업분쟁고충 조정위원회 (관세사회)	통관업 관련 분쟁조정	관세사법시행령 제23조
프로그램 심의조정위원회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권관 련 분쟁조정	컴퓨터프로그램법 제29조의 2
상공회의소	국내외상사분쟁의 조정과 중재	상공회의소법
저작권심의조정 위원회	저작권관련 분쟁조정	저작권법 제81조
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자간 분쟁조정	전기통신기본법 제37조
전기공사업 조정위원회	전기공사의 도급계약 등에 관련 분쟁조정	전기공사법 제14조

자료: 산업자원부·한국전자거래진흥원·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2001 전자
거래분쟁조정사례집」, 2002.1, p.15에서 일부수정.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자거래와 관련한 분쟁해결기구로서 전자거래분쟁위원회가 있을 뿐 e-biz나 e-trade에 특화된 분쟁해결기구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상사중재원을 중심으로 e-biz나 e-trade에 특화된 사이버분쟁해결기구를 설치하여 다양한 분쟁해결수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2) 동북아중심의 다양한 사이버 분쟁해결제도 및 기구의 도입

<표 10>에서와 같이 현재까지 가동되고 있는 온라인ADR의 경우 전자상거래뿐만 아니라 모든 분쟁을 처리대상으로 하고 있고 특히 미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어서 지역적 편중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동북아지역의 e-trade와 관련한 분쟁을 처리할 수 있는 적절한 온라인 ADR기구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온라인ADR을 비롯하여 개별적인 사이버협약, 사이버알선, 사이버중재와 관련한 다양한 분쟁해결기구를 동북아지역내에서 설치하여 가동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10> 현재 가동되고 있는 온라인 ADR

기구명	분쟁대상	국가	비용	결과공개
ClickNSettle.com	모든 분쟁	미국	유료	미공개
Cybersettle.com	재산권 및 손해보험	미국	유료	
SquareTrade.com	전자상거래분쟁	미국	e-bay거래 관련 무료, 기타유료	미공개
e-Mediator.co.uk	온라인거래상의 분쟁, 만파운드이하의 분쟁 또는 ADR	영국	유료	미공개
BBBOnline	소비자관련분쟁	미국, 캐나다	무료	일부공개
ECODIR	전자상거래분쟁	EU	무료	일부공개
InternetNeutral.com	전자상거래분쟁	미국	유료	미공개
InternetOmbudsman.at	전자상거래분쟁	오스트리아	무료	공개
OnlineOmbudsOffice	소비자관련모든 분쟁	미국	무료	미공개
OnlineResolution.com	모든 분쟁	미국	유료	미공개

자료: GDBE,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September 26, 2000, Annex 1., 산업자원부·한국전자거래진흥원·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2001 전자거래분쟁조정 사례집」, 2002.1.

특히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를 중심으로 동북아지역에서의 분쟁관련기관과의 협력으로 동북아전자거래분쟁위원회를 결성하고 중재와 관련해서는 대한상사중재원을 중심으로 동북아지역에서의 중재관련기관과의 협력으로 동북아 상사중재위원회 등을 결성할 필요가 있다.

V. 결 론

한국을 중심으로 각종 e-Trade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e-trade사업을 중심으로 하여 한국이 동북아 e-Hub화로 부상하기 위

해서는 무역거래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전자선화증권과 전자 환어음을 운용할 수 있는 권리등록소의 설치가 매우 중요하다. 동북아 지역내에서 e-trade와 관련한 다양한 분쟁들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 이는 동북아지역내에서 e-trade와 관련한 법제들이 정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적절한 법적인 체계내에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에서 비롯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동북아지역내에서 e-trade를 확산시키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이버환경에 적합한 e-ADR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 특히 사이버공간을 통한 전자거래는 소액분쟁에 대한 처리비용을 줄일 수 있고 국가간에서도 순조로운 분쟁해결절차를 밟을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분쟁해결수단을 필요로 하고 있고 현재까지는 사이버분쟁위원회 또는 사이버법정이 전자상거래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사설메카니즘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각국의 정부에 의해 유도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정부지원의 온라인 ADR이 이러한 사설메카니즘을 구축하는데 유효한 방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동북아지역내에서 e-trade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동북아 e-ADR 체제를 구축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동북아 e-ADR은 종합적인 해결수단을 제공하는 분쟁해결 Portal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여야 하고 그 분쟁해결수단의 핵심은 사이버중재이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동북아 e-ADR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동북아 e-ADR준비위원회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준비위원회에서 한국이 주도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한국내에 동북아e-ADR기구나 e-ADR법정을 유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동북아e-ADR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한 규칙을 제정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GDBE,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September 26, 2000, Annex 1.
- KTNET, "Pan Asian e-Commerce Alliance-전자무역 인프라시스템 구축사업", 2002.
- KTNET, "글로벌 전자무역사업추진현황", 2002.11.
- 동북아 비즈니스중심국가발전기획단, "동북아 비즈니스중심국가 실현 방안", 2002.4.4.
- 산업자원부 "21세기 새로운 수출 동력, 전자무역(e-Trade) 종합 육성 시책", 2001.05.
- 산업자원부 무역정책심의관실, 「한·일 서류없는 무역(Paperless Trade) 실무협력위원회」, 2002.11.15.
- 산업자원부, e-Business 확산 국가전략, 2002. 4.
- 산업자원부, "『동북아 R&BD hub구축』 추진", 2002.08.30.
- 산업자원부, "서류없는 무역실현(한일전자무역 기반시스템구축사업)", 2002.
- 산업자원부, "전자무역(e-Trade) 활성화 종합시책", 2001. 5.
- 산업자원부, "한-일 『서류없는 무역(paperless trade)』 시대 열린다", 2002.4.9.
- 산업자원부·한국전자거래진흥원·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2001 전자거래분쟁조정사례집」, 2002.1.
- 이창한, "한·일간 전자상거래협력 현황", 「2002년도 추계정책포럼 및

- 학술대회-e-비즈니스의 확산과 글로벌화」, 국제e-비즈니스학회, 한국통상정보학회, 2002.11.15.
- 정부, “2002 e-비즈니스 확산 국가전략-정보기술과 전통산업의 융합”, 2002.6.20.
- 정부, “e-비즈니스 확산국가전략”, 2001.4.27.
- 정부, “동북아 비즈니스중심국가 실현방안(정부시안)”, 2002.7.29.
- 조동우, “ASEM 전자무역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정책방향과 추진현황”, e-commerce, 2002년 9월호(통권42호), 2002.9.
- 최석범, “동북아 e-Hub화를 위한 전자거래기반구축에 관한 연구”, 「2002년도 추계정기학술발표대회논문집-전통적 무역거래관행과 새로운 전자무역관행의 조화」, 한국국제상학회, 2002.11.23.
- 최석범, “인터넷상거래상의 분쟁사례분석을 통한 효율적인 사이버법률 구성모델에 관한 연구”, 「국제상학」, 제17권 제1호, 2002.05.
- 한국전자거래협회, “e-Trade Hub구축사업(e-AMP)”, 2002.5.18.
- 한국전자거래협회, “한일e-Trade Hub구축사업 1차년도 중간보고서”, 2002.5.
- 홍성규,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ADR의 특성과 실현과제”, 「국제상학」, 제16권 제2호, 2001.11

ABSTRACT

Dispute Resolution by e-ADR for e-Trade in the Northeast Asia

Seok-Beom Choi, Chong-Suk Park, Jae-Woo Jung

Korean Government is increasingly focusing on the Northeast Asia Business and Logistics Hub strategy to create a competitive advantage. A key element of this strategy is creating or leveraging distribution and logistics hubs that act as centres for distribution in Northeast Asia. A Northeast Asian e-Hub Policy is required for business hub and logistics hub in the Northeastern Asia.

An e-Hub is an integrated, sophisticated set of e-Biz, information and e-trade facilities and services that provides access to a marketplace and exchange the e-trade data. To study the e-Hub policy, Pan Asian e-Commerce Alliance, Korea-Japan e-Trade Hub project, and ASEM e-Trade project are considered.

E-trade via cyberspace may need new methods of dispute resolution to reduce transaction costs for small value-related disputes and to erect structures that work well across national boundaries. Voluntary Mediation Councils and cyber tribunals should be encouraged by governmental sectors to continue developing private sector mechanisms to resolve e-trade disputes. Government-sponsored online cross-border dispute resolution

systems may be also be useful to complement these private sector approaches.

E-trade in Northeast Asia results in disputes owing to the incompleteness of e-trade law in the countries. These disputes contain disputes regarding e-trade model, central title registry, authentication body. To resolve these disputes in the Northeast Asia, a variety of electronic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bodies must be organized under cooperation of Korea, Japan, China.

This study deals with the e-ADR construction in the Northeast Asia to resolve the disputes in the e-trade and to activate the e-trade in the Northeast Asia.

Key Words: e-Hub, logistics hub, Northeast Asia, ADR, e-ADR